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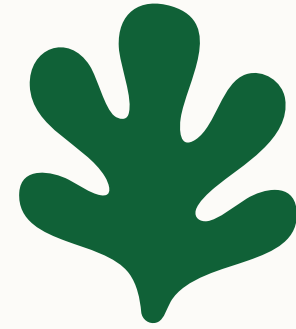
EU PPWR

포장재 글로벌 규제 대응 전략 정부 합동 설명회

2026.4.29



한국환경공단



EU PPWR

왜 도입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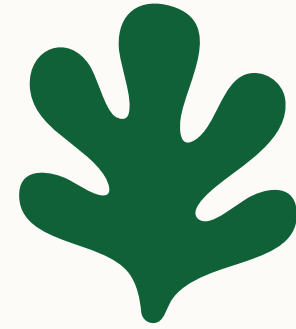
Packaging waste in the EU

Kilograms per person



2018년 대비 감축

- * 2030년 5%
- * 2035년 10%
- * 2040년 15%



EU PPWR

지침문서 및 FAQ



Brussels, 30.3.2026
C(2026) 2151 final

COMMUNICATION TO THE COMMISSION

Approval of the draft Commission Notice on the Guidance document for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지침문서, FAQ 승인('26.3.30)

- ✳ ('25.10.13) 폐기물위원회 회의
- ✳ ('25.12.9) 부처간 협의
- ✳ ('26.3.5) COREPER 회의
- ✳ ('26.3.30) 집행위원회 승인

지침문서



Brussels, 30.3.2026
C(2026) 2151 final
ANNEX

ANNEX

to the

Communication to the Commission

Approval of the draft Commission Notice on the Guidance document for Regulation
(EU) 2025/40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EN

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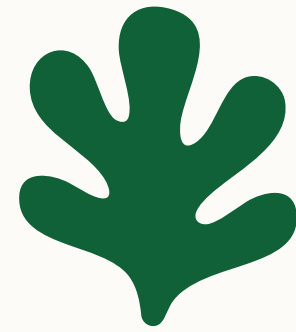
FAQ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Frequently Asked Ques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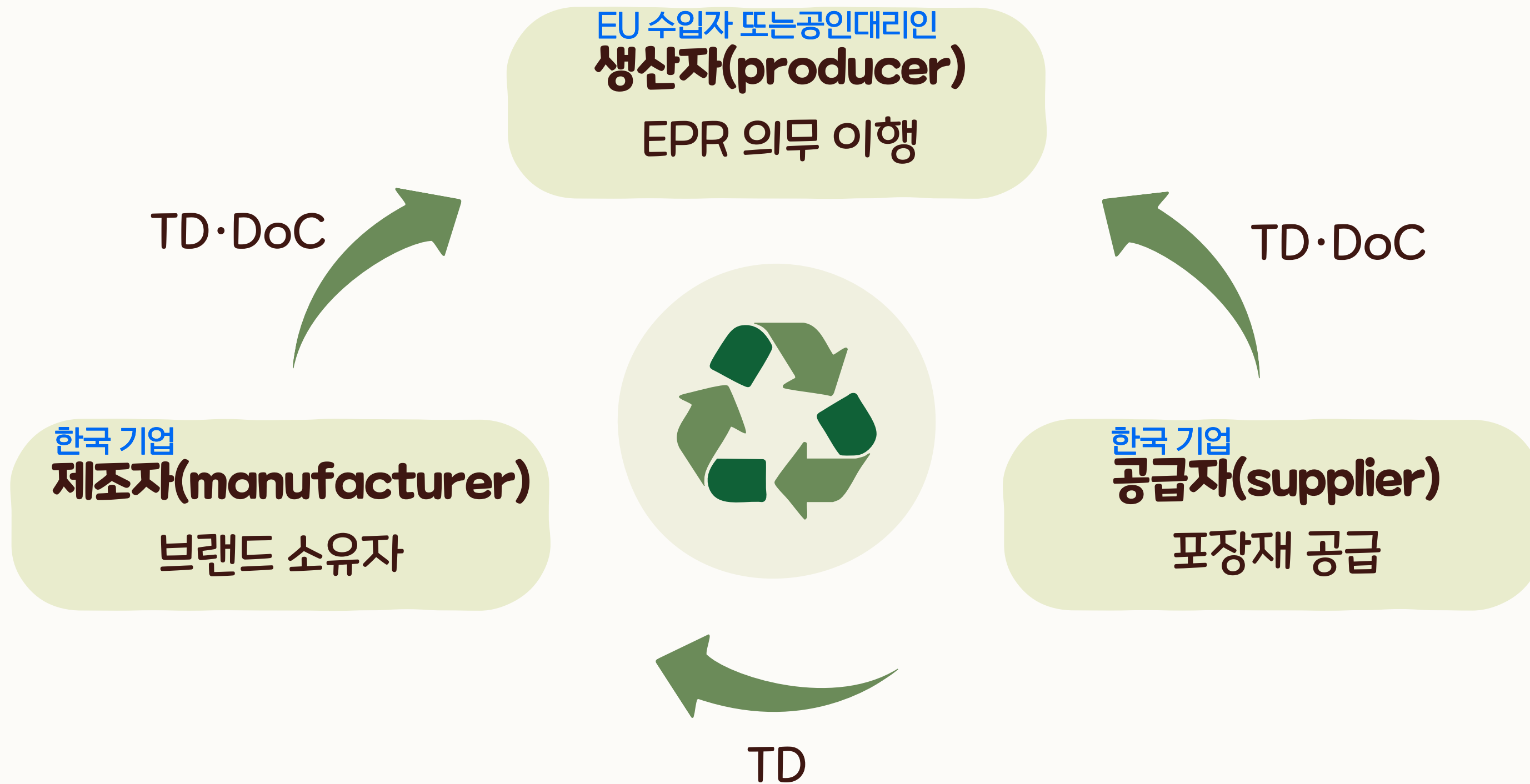
DG ENV, Unit B01
March 2026



EU PPW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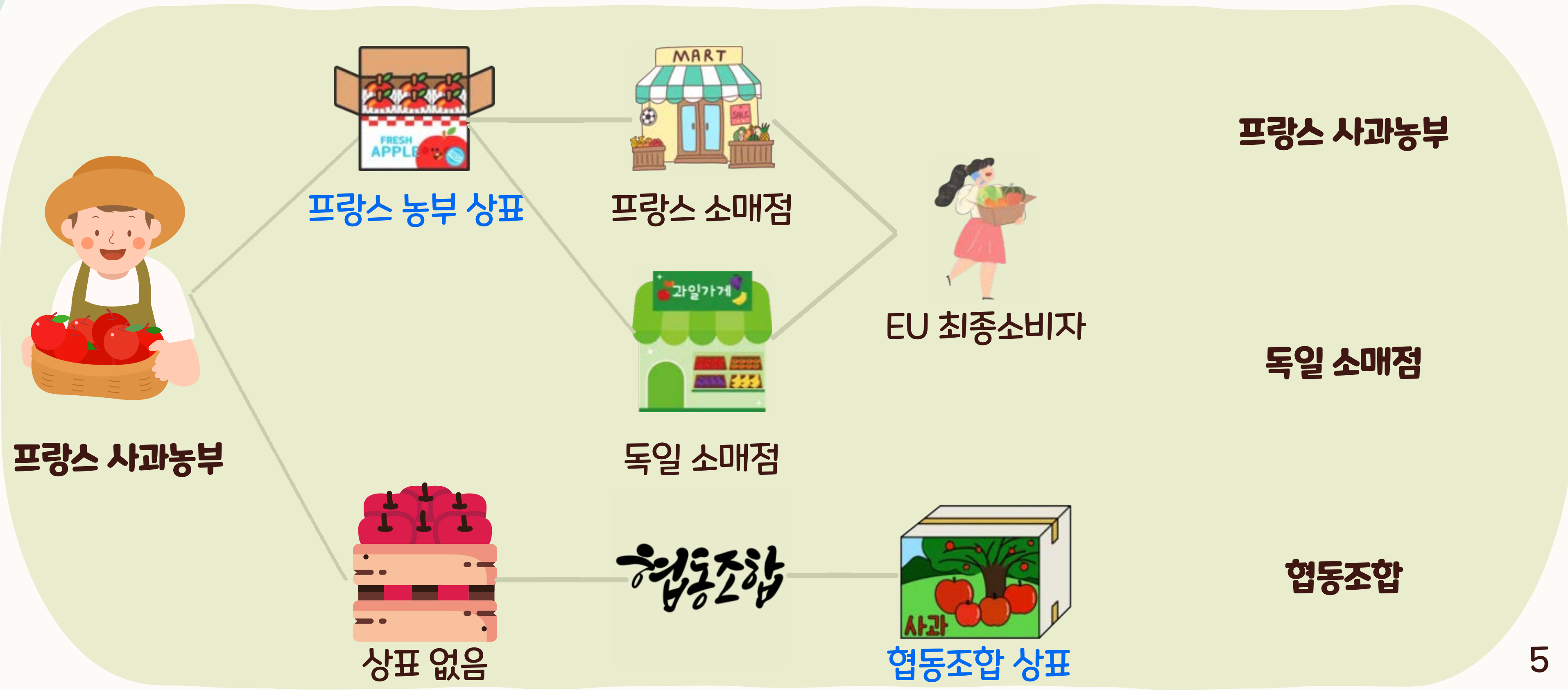
누가? 뭘? 해야하는가?

경제주체별 역할



생산자(Producer) → EPR 의무 수행

FAQ II .DEFINITIONS. 5)



제조사(Manufacturer) → TD·DoC

FAQ X.OBLIGATIONS OF MANUFACTURERS. 1)

01

PPWR 제16조

기술문서(TD) 작성

포장의 용도, 재료, 도면 등 포함
필요시, 시험성적서 동봉

02

PPWR 제38조

적합성 평가

부록 VII.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라 수행
제조사·시험기관·인증기관 중 한 곳

03

PPWR 제39조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제조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단, 법적 책임은 제조자가 단독 부담

공급자(Supplier) → TD 작성

PPWR 제16조

02 기술문서(TD) 작성

포장의 용도, 재료, 도면 등 포함
필요시, 시험성적서 동봉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

제도소개

업무계산기

고객마당

고객마당

공지사항

통합자료실

포장재 재질구조 간이평가

통합자료실

부담금

EPR

EcoAS

업무 구분

EU PPWR

조회

번호	업무 구분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	EU PPWR	알림 유럽연합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관리자	2026-01-29	1363
5	EU PPWR	기술문서(TD) 작성 예시	관리자	2026-02-20	102
4	EU PPWR	적합성선언서(DoC) 작성 예시	관리자	2026-02-20	92
3	EU PPWR	[포장재공제조합] PPWR 주요내용 및 후속 조치 일정 보고서	관리자	2026-02-02	163
2	EU PPWR	[KOTRA]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주요 내용	관리자	2026-02-02	132
1	EU PPWR	제품 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 발표자료	관리자	2026-01-30	137

EU 화상회의의 결과

01 회원국별 공인 대리인 목록을 열람할 수 있는가?(제45조3항)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목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PR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제조사가 선택해야함

02 공인대리인은 회원국별 선임해야 하는가?(제45조3항)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단일 접속 창구` 구축을 검토하고 있음
해당 서비스 체계가 구축된다면 한 번의 등록으로 EU 여러 회원국에 등록한 것으로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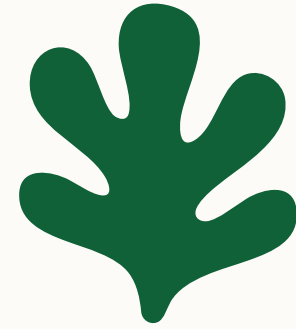
EU 화상회의의 결과

03 B2C기업의 경우 직접 EPR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가?(제45조4항)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온라인플랫폼을
서면 위임장을 통해 공인대리인으로 선임하여 EPR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음

04 `26.2.12 제정 예정인 EPR 의무 이행 법령의 진행상황은?(제44조14항)

당초 2026년 2월 12일 제정 예정이었으나, 2026년 중반으로 일정이 조정됨
곧 공개 공청회가 열릴 예정임



EU PPWR

한국 기업 대응 전략

포장재 준수사항 → TD, DoC 작성

구분	내용	위임이행법	시행일	비고
제5조	유해물질 최소화	-	'26.8.12	중금속, PFAS
제6조	재활용 등급	'28.1.1	'30.1.1	위임법 발효 후, 24개월 후 중 늦은날
제7조	재생원료 사용	'26.12.31	'30.1.1	이행법 발효 후, 3년 후 중 늦은날
제8조	바이오플라스틱	-	-	기술 개발현황 검토(~28.2.12)
제9조	퇴비화	-	'28.2.12	
제10조	포장최소화	-	'30.1.1	
제11조	재사용 가능	'27.2.12	'26.8.12	재사용가능한 포장임을 인정
제12조	라벨링	'26.8.12	'28.8.12	이행법 발효 후, 24개월 후 중 늦은날
제24조	포장 빈공간 비율	'28.2.12	'30.1.1	이행법 발효 후, 3년 후 중 늦은날
제26조	재사용가능 포장재 의무	-	-	EU 운영자에게 서면 확인 요청
제29조	재사용 목표	-	'30.1.1	산정방법은 '27.6.30 제정

시행 '26.8.12

제5조 유해물질 → 중금속

01 포장재별 그룹화

포장재 공급사, 재질 등을 기준으로 구분 작업

02 시험성적서 발급

ISO/IEC 17025 인증 시험기관에 의뢰

03 TD, DoC 준비

중금속 100mg/kg 이하 입증(모든 포장재)

✳ 재생원료를 사용한 유리병은 100mg/kg 초과 인정, 단 200mg/kg 초과시 당국 보고

결정 2001/171/EC

시행 '26.8.12

제5조 유해물질 → PFAS

01 포장재별 그룹화

포장재 공급사, 재질 등을 기준으로 구분 작업

02 시험성적서 발급

ISO/IEC 17025 인증 시험기관에 의뢰

03 TD, DoC 준비

PFAS 함량 미만 입증(식품 접촉 포장재)

✳ 재고 소진 기간 미부여, '26.8.12부터 시장에 출시하는 식품 접촉 포장재는 반드시 준수

시행 '26.8.12

PFAS 단계별 접근 방식

지침문서 5.Enforcement of PFAS restrictions in food contact packaging and exhaustion of stocks

01 총 불소(TF) 정량 분석

50mg/kg(ppm) 미만인 경우, 기준 충족으로 간주

02 유기 불소 정량 분석

50mg/kg(ppm) 미만인 경우, 기준 충족으로 간주
(예시) 열분해-GC/MS

03 TOP(총 산화성 전구체) 분석

개별 PFAS 25 μ g/kg(ppb) 미만
합계 PFAS 250 μ g/kg(ppb) 미만

EU 화상회의의 결과

01 PFAS 표준 시험법 제정 예정인지?

현재 PPWR TF팀에서 식품접촉포장재의 샘플링 및 시험 방법을 개발 중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음(수개월 이내로 예상함)

02 제조사 자체 연구소 시험결과가 인정되는가?

제조사의 자체 시험분석은 독립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인정하지 않음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ISO IEC 17025 인증을 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해야함

EU 화상회의의 결과

03 시험성적서 발급 기준은 몸체, 잉크, 접착제 등 각각인가? 최종 포장재인가?

제조사가 판단해야함

PFAS 제한 규정은 잉크, 바니시, 접착제를 포함한 전체 포장 단위를 대상으로 적용함

04 다층 포장재의 경우, 직접 접촉한 층만 분석하면 되는가?

제조사가 판단해야함

식품과 직접 닿지 않는 중간층에서 발생 가능한 PFAS도 고려해야함

시행 '26.8.12

제11조 재사용 가능

다음 사항을 기술문서로 입증하면,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간주

- 01 가능한 많은 횟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02 소비자의 건강,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
- 03 내용물을 비울때 재사용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손상되지 않는 포장
- 04 부록VI 제B편에 따라 재가공할 수 있는 포장
- 05 재가공해도 라벨 부착이 가능하고, 필수 표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포장
- 06 다시 내용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담당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시행 '26.8.12

기술문서(TD) 작성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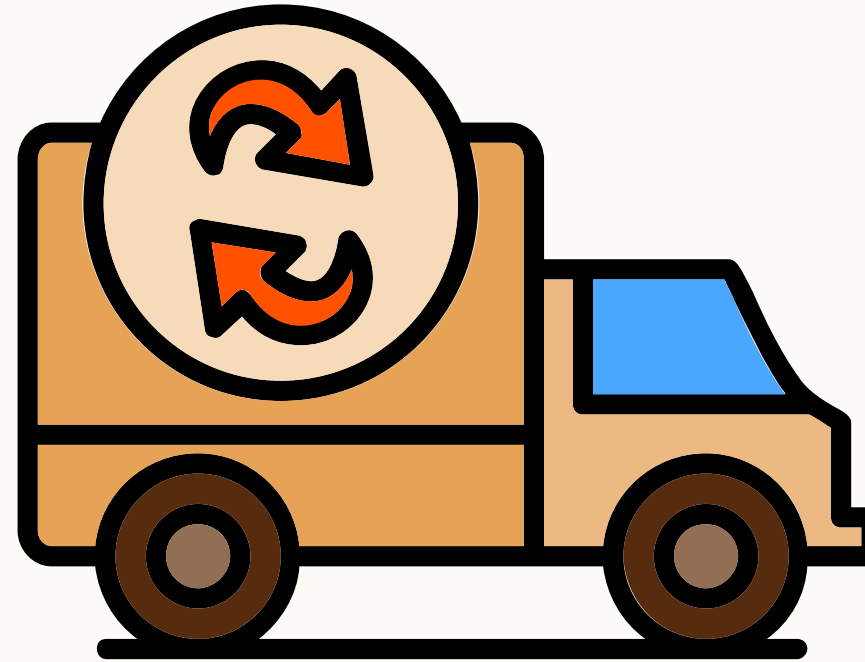
다음 사항을 기술문서로 입증하면,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간주

01 일반 사용조건에서
회전 횟수

02 유럽 내에 재사용
시스템의 존재

03 사용 종료 후 폐기
시, 재활용 가능 여부

04 유해물질 제한



개방형 재사용 시스템

폐쇄형 재사용 시스템(QR코드 부착, 최소 회전 횟수 산정·보고 의무를 부여)

독일의 롱넥(longneck) 유리병 재사용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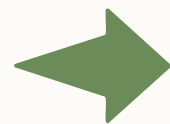
개방형 재사용 시스템

FAQ X III. REUSE AND REFILL.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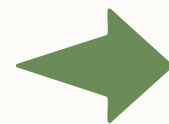
생산

0.33리터
표준디자인



배출 · 수거

판트(Pfand)
보증금 약 120원



재생산



유통

전용 운송 포장
보증금 약 3,000원

유로 팔레트(Paleet) 재사용 시스템



※ 출처 : 유럽 팔레트 협회

FAQ X III. REUSE AND REFILL. 2)



800 x 1200 x 144



1200 x 1000 x 162



1000 x 1200 x 144



1200 x 800 x 400



1200 x 800

시행 '30.1.1

제29조 재사용 목표

(1항) 사용하는 운송 포장의 총 중량 중 '30년 40%, '40년 70%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운송 포장 종류 선택

(2항, 3항) 단, 계열사·파트너 간의 운송포장은 '30.1.1 부터 100% 재사용

팔레트



운반상자



트레이



용기



IBC



랩, 스트랩



관보게재 '26.2.25, 발효 '26.3.17

100% 재사용 의무 → 랩, 스트랩 면제

PPWR 제29조 2항, 3항

랩, 스트랩



Brussels, 25.2.2026
C(2026) 511 final

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EU) .../...

of 25.2.2026

on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25/4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by exempting certain economic operators that use pallet wrappings and straps from the 100% reuse requirements of these packaging formats

(Text with EEA relevance)

Windows 정
[설정]으로 이동

현행 유지 여부 결정 '34.1.1

제29조 재사용 목표

PPWR 제29조 4항

운송 포장 → 예외

위험물운송

지침 제2008/68

폭발성물질

가스류

인화성액체

가연성고체

산화성물질

대형기계류·장비

개별 요구사항에
맞게 포장을 설계

출고량 1톤 미만

초소형 기업

식품·첨가물· 사료 접촉 FIBC



골판지상자



시행 '30.1.1

제29조 재사용 목표

PPWR 제29조 5항

상자형 묶음포장
(판지류 제외)

'30년 10%

'40년 25%



PPWR 제29조 6항, 7항

음료(다회용컵)

'30년 10%

'40년 40%

적용범위 '27.2.12

제외

고부패성음료

우유 및 유제품

포도주류, 증류주

발효음료

적용범위 '27.2.12

참고 재사용 포장재의 표준 설계 기준(CSA그룹, '26.2.25 발간)



RESOLVE | PR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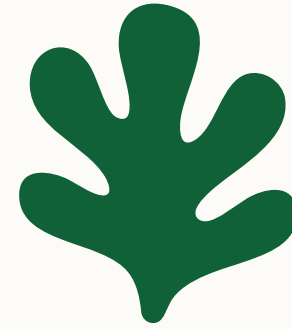
National Standard of Canada
American National Standard

RES-001:26/CSA R304:26

Reusable packaging system design
standard: Container design and
performance



scc ccn



EU PPWR FAQ

주요 내용

포장재란?

지침문서 1. Definition of packaging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을 보관, 보호, 취급, 배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판매포장



묶음포장



운송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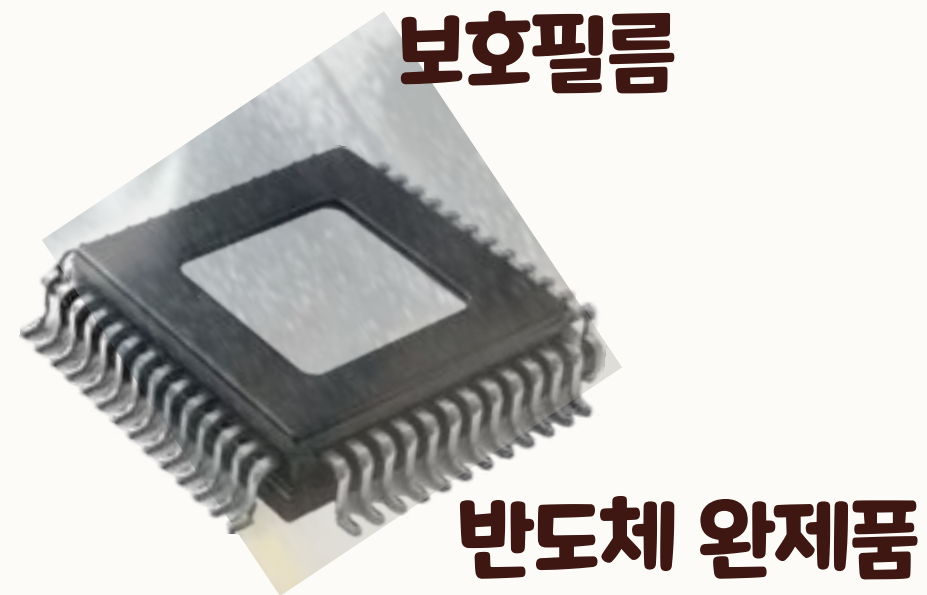


NO 포장재



접착 필름 (adhesive film)

지침문서 1.Definition of packaging



YES 포장재

- * 완성된 반도체의 흠집 방지를 위해 붙이는 보호용 필름
- * 제품의 보호 및 운송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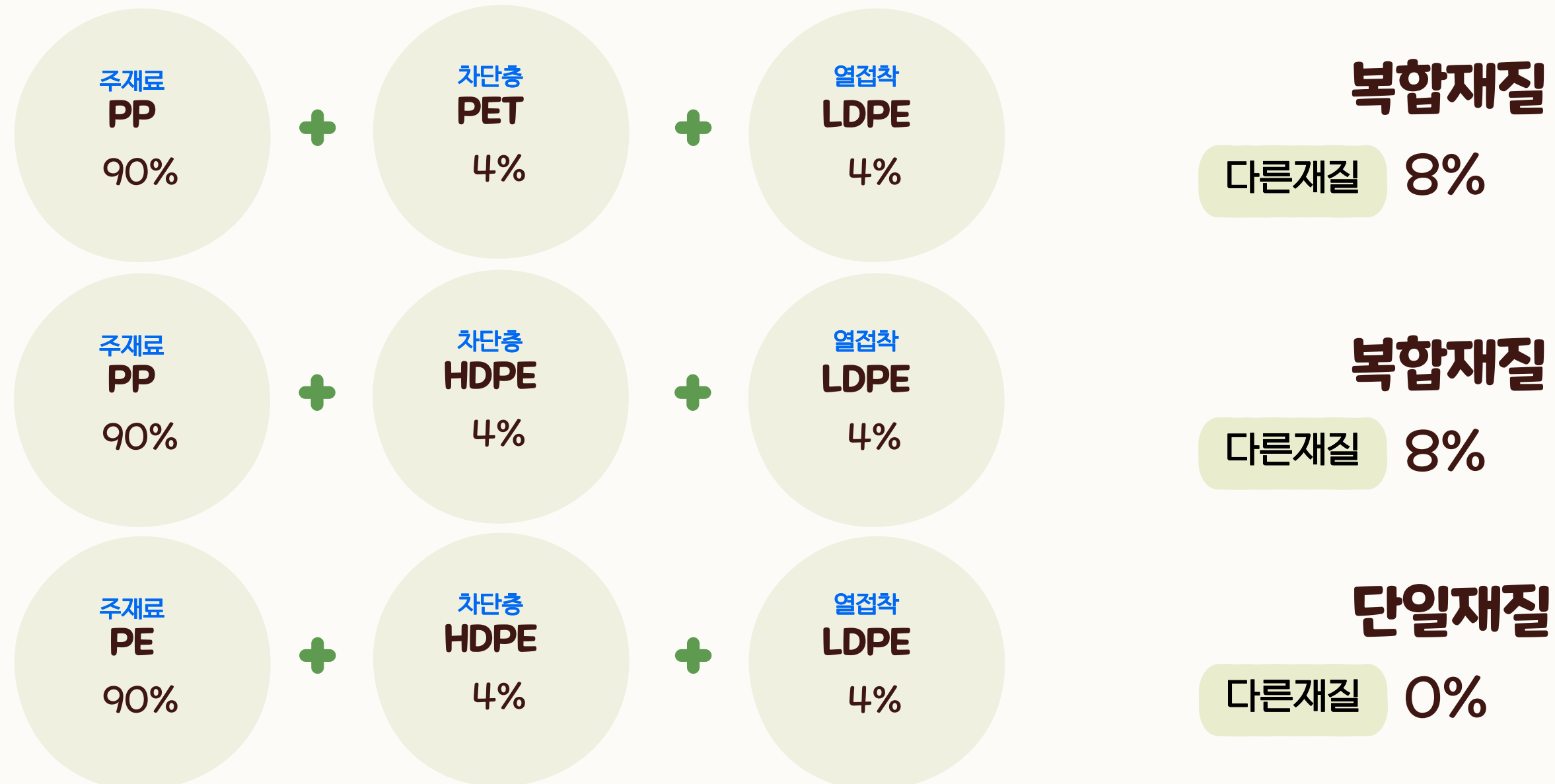


NO 포장재

- * 반도체 제조시, 미세회로를 깎을때 표면을 고정하기 위해 붙이는 필름
- * 공정 도구 목적

복합재질 (composite packaging)

FAQ II .DEFINITIONS. 6)



- ✱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제3조24호)
- ✱ 바니시, 페인트, 인쇄 잉크, 접착제, 래커, 중량 기준 5% 이하 재질은 고려하지 않음
- ✱ 손으로 분리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재질의 구성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재활용 등급(제6조)

01

평가 대상은?

FAQ IV. RECYCLABILITY 1)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전체 포장 단위

02

'26.8.12부터 TD와 DoC를 제출해야하는가?

지침문서 6. Date of application of the requirement to ensure that packaging is recyclable

PPWD에서는 기술 문서(TD)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지 않음

위임법이 발효될 때까지 PPWR 제38조 부록 VII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수행할 필요 없음

시행 30.1.1, 위임법 '26.12.31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제7조)

FAQ V. RECYCLED CONTENT IN PLASTIC PACKAGING

공급자
A사



PP(9g)

공급자
B사



PET(24g)

공급자
C사



PP(0.8g)

제조자
D사



33.8g

포장

접촉민감성

일회용플라스틱 음료병

5% 미만

의무율

10%

30%

면제

역할

정보제공

정보제공

정보제공

TD, DoC 작성

EU 화상회의의 결과

01 non-EU 재생원료를 인정하지 않을 계획인지?(SUPD 이행법령 초안)

현재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의 폐기물 처리방식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중임
해당 보고서가 발간되면 검토 후, 인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2027.11.21)

02 non-EU 재생원료의 안전성·동등성 입증 방법은?(FAQ V. 11)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음
2026.12.31 제정 예정인 이행 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임(PPWR 제7조10항)

적합성평가(제38조)

01

적합성 평가 수행일은 언제인가?

FAQ X V. ASSESSMENT OF THE CONFORMITY OF PACKAGING 1)

관련 조항에서 적용 개시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6.8.12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적용일이 적합성평가 수행일임

02

EU 법규마다 적합성 선언서를 별도 작성해야 하는가?

FAQ X V. ASSESSMENT OF THE CONFORMITY OF PACKAGING 4)

모든 연합 법규에 대해 단일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이 가능함
단, EU 법규 및 그 참조 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적합성평가(제38조)

03

병, 마개, 라벨과 같은 각 부품별로 작성해야하는가?

FAQ X V. ASSESSMENT OF THE CONFORMITY OF PACKAGING 5)

적합성평가와 적합성선언서 작성 대상은 전체 포장 단위임
통합된 구성 요소와 분리된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

04

기존 PPWD의 EN 표준으로 PPWR의 적합성 추정이 가능한가?

FAQ X V. ASSESSMENT OF THE CONFORMITY OF PACKAGING 10)

PPWD EN 표준은 지침으로만 사용될 수 있음
위원회는 기존의 조화 표준 목록을 폐지하기 위한 공식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임

적합성평가(제38조)

03 크기만 다른 동일한 재료의 포장재의 경우, 단일 적합성 선언서 작성이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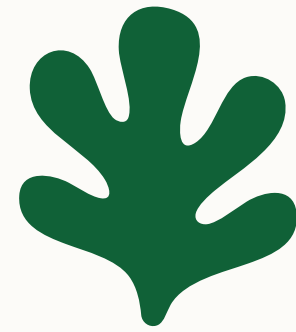
FAQ X V. ASSESSMENT OF THE CONFORMITY OF PACKAGING 11)

포장이 동일한 특성을 갖는 수준에서는 단일 적합성 선언서, 기술문서 작성이 가능함
포장재 구성 차이가 제5조부터 제12조에 명시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04 시장감시 수행은 누가 하는가?

FAQ X V. ASSESSMENT OF THE CONFORMITY OF PACKAGING 13) 14)

회원국은 2027년 2월 12일까지 PPWR 위반 시 필요한 제재사항을 규정할 예정임
단, 과태료 부과는 PPWR의 특정 조항에서 회원국의 재량권을 허용한 조항에 한함



EU PPWR

마무리

결론

✓ '26.8.12부터 TD, DoC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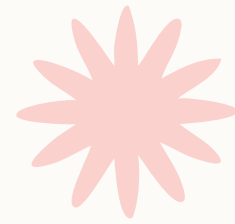
* (제5조) 유해물질

(중금속) 합계 100mg/kg 이하인 ISO/IEC 17025 시험성적서 준비 **모든 포장재**

(PFAS) 총불소 50mg/kg 미만인 ISO/IEC 17025 시험성적서 준비 **식품접촉 포장재**

* (제11조) 재사용 가능

(법적인정) 제11조1항을 입증하는 기술문서 제출 시, 재사용 가능 포장재로 간주



Thank You

packing@keco.or.kr



한국환경공단

2026

중소기업 PPWR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 소개

2026. 0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EU PPWR TF장 황범구



Table of **CONTENTS**

Chapter 01



PPWR 규정 요약

Chapter 02



PPWR 기업 대응방안

Chapter 03



PPWR 대응 지원사업

Chapter 01.

PPWR

규정 요약



PPWR 규정 전체 조항



PPWR 규정 요약 01

제1장 : 일반 규정

주제 및 목표

- 순환 경제 전환 및 환경 보호

2026.08.12

적용 범위

- EU 시장 내 모든 포장재
- 제조·수입·판매자 포함

포장 구분

- 1차 (판매 포장, Sales)
- 2차 (묶음, Grouped)
- 3차 (운송/물류, Transport)

제2장 : 지속가능성 요구사항

포장재 내 유해물질 제한 (제5조)

- 4대 중금속: $\leq 100\text{mg/kg}$
PFAS (식품 접촉 포장)
 - 단일 PFAS $\leq 25\text{ ppb}$
 - 여러 PFAS 합 $\leq 250\text{ ppb}$
 - 전체 PFAS (고분자 포함) $\leq 50\text{ ppm}$
 * 전체 불소 50mg/kg 초과 시 PFAS 유래 여부 증빙

2026.8.12

재활용 가능 포장재 (제6조)

- 2030년 : C등급 이상 ($\geq 70\%$)
- 2038년 : B등급 이상 ($\geq 80\%$)

2030.1.1

재생원료 함량 (제7조) * '30, '40년 기준

- PET 접촉민감포장 (**30%, 50%**)
- PET 이외 접촉민감포장 (**10%, 25%**)
-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 (**30%, 65%**)
- 기타 플라스틱 포장 (**35%, 65%**)

2030.1.1

플라스틱 포장재의 바이오 기반 원료 (제8조)

- 원료 출처 및 함량 정보 제공

퇴비화 가능 포장재 (제9조)

- 대상 : 티백, 커피 패드, 스티커,
초경량 비닐 봉투 (15 마이크론 미만)

2028.2.12

포장재 최소화 (제10조)

- 무게·부피를 최소한으로 제한
- 부속서 IV 8가지 성능 기준

2030.1.1

재사용 포장재 (제11조)

- 재사용 포장 9개 요구사항
- 2027.2.12 유형별 최소 회전 기준 채택

2025.2.11

3장 : 라벨링, 표시 및 정보

포장재 라벨링 (제12조)

- 재료 구성, 분리 배출 방법
- QR 코드 정보 제공

2028.8.12

포장재 라벨링 (재사용 라벨) (제12조)

- 재사용 가능성 표시
- QR 코드 추가 정보

2029.2.12

친환경 주장 (제14조)

- PPWR 최소 요건 초과한 경우에만 허용

* PPWR 적합성 평가: 제조자 책임하에 제5조 ~ 제12조 요구사항 충족 보장 및 선언 필요

PPWR 규정 요약 02

제4장 : 일반 의무

제조업자 의무 (제15조)

- 기술문서(TD), 적합성선언서(DoC) 작성
- 5년(일회용)/10년(재사용) 보관

2026.8.12

공급업자 의무 (제16조)

- PPWR 규정 준수 및 정보 제공

수입업자 의무 (제18조)

- PPWR 규정 준수 확인
- TD, DoC 사본 보관

2026.8.12

유통업자 의무 (제19조)

- 생산자 등록 확인, 라벨링 점검

2026.8.12

제5장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감축 의무

과대 포장 관련 의무 (제24조)

- 빈 공간 ≤ 50%

2030.1.1

특정 포장 형식 사용 제한 (제25조)

- 일회용 과일·채소 소포장 (<1.5kg)
- HORECA 일회용 포장
- 일회용 호텔 미니 어메니티
- 초경량 비닐봉투 (<15μm)
- 일회용 플라스틱 그룹 포장

2030.1.1

재사용 시스템 관련 의무 (제27조)

- 재사용 시스템 참여 의무

2026.8.12

재사용 목표 (제29조)

- 운송 포장 40% / 70%
- 묶음 포장 10% / 25%
- 음료 포장 10% / 40%

2030.1.1

제7장 : 포장재 적합성

공통 기술 규격 (제37조)

- 조화 표준: 추후 확정
- 공통 기술 규격 지정

적합성 평가 절차 (제38조)

- 제조사 정보, 포장 설명
- 시험 결과, 성능 평가
- 적합성 선언서 사본

2026.8.12

적합성 선언 (DoC) (제39조)

- 부속서 VIII 양식
- 5년(일회용) / 10년(재사용) 보관

2026.8.12

제8장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리

생산자 등록 (제44조)

- 회원국별 등록 의무
- 등록 시스템 구축: ~ 2027년 중반
- 생산자 등록 의무: 시장 출시 전 필수

2026.8.12

EPR (확대된 생산자 책임) (제45조)

- 오염자 부담 원칙
- 생산자 폐기물 관리 의무

2026.8.12

PRO (생산자 책임 조직) (제46조)

- 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sation) 활용 가능

Chapter 02.

PPWR

기업

대응방안



기업 대응 실무 (1) 포장 단계 및 구성품 확인



기업 대응 실무 (2) 포장 데이터 확보

✓ PPWR 대응의 시작은 포장 데이터 확보가 우선!

Check list



판매포장, 그룹포장,
운송포장 BOM



포장재
사용용도 등



포장 부품별
재질 정보



도면 또는 사진



포장 부품별
중량 정보



공급업체 확인자료
또는 시험자료

제품 하나가 아니라 판매-그룹-운송포장 전체를 하나의 포장 시스템으로 보고 준비

기업 대응 실무 (3) 포장재 인벤토리 구축

1. 대상 선정



- EU 수출 제품 선정
- 판매, 그룹, 운송, e-commerce 포장 구분

2. 포장 목록화



- 제품별 포장 유형 정리
- 포장 부품 (박스, 필름, 라벨, 완충재 등) 분해

3. 데이터 수집



- 재질/중량/규격/공급업체 정보 확보
- BOM, 도면, 선언서, 시험자료 수집

4. 인벤토리 DB화



- 제품-포장-부품-재질 증빙 연결
- 엑셀 또는 사내 관리표로 통합

5. PPWR 항목별 검토



- 재활용성
- 포장 최소화
- 재생원료 함량
- 중금속·PFAS
- 라벨링 대응

6. 변경관리, 업데이트



- 공급업체 변경
- 재질/두께/중량 변경
- 신제품 추가 시 즉시 반영

기업 대응 실무 (4) 우려물질 함량 증빙자료 확보

의무 시행

2026. 8. 12 부터 적용

Step 01



적용범위먼저구분

- 4대 중금속:
모든 포장, 포장부품 확인
- PFAS:
식품 접촉 포장 중심 확인

Step 02



기본문서우선 확보

- BOM, 재질정보, 공급업체
자료 우선 확보
- 부품별 추적체계 마련

Step 03



4대 중금속은 문서+시험 병행 확보

-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시험인증기관에 분석 의뢰

Step 04



PFAS는 단계적으로 확인

-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필요 시 단계적 PFAS 분석 수행

Step 05



최종 증빙체계는 부품별 결과 + 종합판정으로 정리

- 포장 유형별 부품 결과 정리
- 적합 여부 종합 정리 후 기술
문서 반영

우려물질 증빙은 적용범위 확정 → 공급망 문서 확보 → 필요 시 시험 수행 → 부품별 결과 및 종합판정

기업 대응 실무 (5) 기술문서 작성 (TD)

의무 시행

2026. 8. 12 부터 적용

- 제조자는 기술 문서를 작성하여야 함
- 기술문서에는 포장재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부적합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분석 및 평가를 포함하여야 함
- 기술 문서는 적용 가능한 요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경우, 포장재의 설계, 제조 및 운영을 포함해야 함
- **기술 문서는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함**



01. 포장재 및 용도

Packaging & Intended Use

- 일반적인 설명



02. 설계 및 도면

Design & Drawings

- 개념적 설계, 제조 도면, 부품 재료



03. 구조 및 작동

Structure & Operation

- 도면 이해, 포장 구조/작동 원리 설명



04. 표준 및 사양 목록

List of Standards & Specifications

- 조화 표준 (Harmonized Std)
- 공통 사양 (Common Specs)
- 기술 사양 (Technical Specs)
- 적용 부분 표시 (Applied Parts)
- 미적용 해결책 (Alternate Solutions)



05. 평가 수행 설명

Assessment Description

- 재활용성, 최소화, 재사용 평가 수행에 대한 정성적 설명



06. 시험 보고서

Test Reports

- 관련 시험 보고서

* 유해물질 제한 관련 내용 등 5조 ~ 12조 관련 내용을 기술문서에 기재

기업 대응 실무 (6) 자기적합성선언서

시행 규정 및 주의사항

- 2026.8.12부터 부속서 VIII에 명시된 양식에 맞춰 작성
- 일회용 포장재 5년, 재사용 포장재는 10년간 보관 필수
- DoC는 기술문서(TD)와 함께 준비되어야 함
- 부속서 VIII의 양식을 정확히 따라야 함
- EU적합성 선언서는 제조자가 작성하며, 수입업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함
- 모든 정보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

자기적합성선언서(DOC) 포함 내용

기본 정보 (1, 2, 3)	• 포장 고유 식별 No. 및 제조자/대리인 정보 • 제조자 전적인 책임 하에 발행	표준 및 참조 (6)	• 조화 표준, 공통 사양, 기타 기술 사양 참조
대상 및 준수 (4, 5)	• 선언 대상 포장 설명 (추적성) • 관련 EU 조화 법령 준수	추가 정보 및 서명 (7, 8)	• (해당시) 인증기관 정보 및 인증서 세부 사항 • 추가 정보, 서명, 발행지 및 일자, 성명 및 직책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1. No (Unique identification of the product):

2. 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er:

- Company Name : ABC Co., Ltd.
- Address : 600, Suwon-city,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3. This declaration of conformity is issued under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4. Object of the declaration (identification of the packaging allowing traceability):

Product Description:

5. The object of the declaration described in point 4 is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 Regulation (EU) 2025/4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6. References to the relevant harmonised standards or the common specification used or references to the other technical specifications in relation to which conformity is declared:

- EN 13427:2004 - Requirements for the use of European Standards in the field of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 EN 13428:2004 - Packaging - Specific requirements for manufacturing and composition - Prevention by source reduction
- EN 13429:2004 - Packaging - Reuse
- EN 13430:2004 - Packaging - Requirements for packaging recoverable by material recycling

Signed for and on behalf of :

Place and date of issue: _____

Name, function, signature: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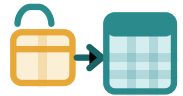
(Signature)

<DoC 작성 예시 >

기업 대응 실무 (7) 재활용성 평가 증빙자료 확보

의무 시행

2030. 1. 1 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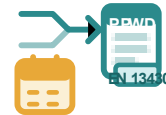
포장유형별 범위 확정

포장유형, 구성부품 구분
→ 부품 단위 BOM 우선 정리



자료 확보

재질, 중량, 도면, 공급업체 자료 확보
→ 재질구조, 분리가능성 설명자료 준비



자료 중심으로 준비

전환기에는 PPWD, EN 13430 기준으로
재활용성 근거 준비
→ Article 6(4) 위임법 발효 전까지 PPWR
재활용성 등급의 적합성평가 불필요



부품별 근거 + 종합판정

부품별 재질, 구조, 평가자료 정리
→ 포장 유형별 재활용성 검토결과
종합 반영

포장유형별 BOM 정리 → 재질, 설계 자료 확보 → 전환기 기준(PPWD/EN 13430) 근거 정리 → 부품별 결과 및 종합판정 정리

기업 대응 실무 (8) 최소화 평가 증빙자료 확보

의무 시행

2030. 1. 1 부터 적용



Step 1. 포장유형, 기능 구분

필요 최소 수준으로
설계 여부 검토



Step 2. 중량, 부피, 치수 자료 확보

최소화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Step 3. 전환기 최소화 준비

전환기에는
기존 EN 13428:2004를 기준



Step 4. 도면, 사진, 사양서 확보

구조와 설계 의도 설명
최소화 평가는 Annex IV의
성능기준에 기반



Step 5. 기능상 필요성 근거 정리

제품보호, 물류, 안전 등에
필요한 설계인지 검토



Step 6. 최종 종합 후 기술문서 반영

포장유형별 최소화 검토 결과를 정리해 기술문서에 반영
- 기존 최소화 요구는 EN 13428 (2029년 말까지)
- 조화 표준은 2030년 1월 1일 부터 적용

포장 기능 정리 → 중량, 부피, 도면 확보 → 필요 최소 설계 근거 정리 → 필요시 시험 수행 → 기술문서 반영

기업 대응 실무 (9) 기타 지속가능성 요구사항 증빙자료 확보



제7조

재생원료 함량

공급업체 재생원료 함량
확인서, 산정근거, 인증자료 확보
→ 기술문서에 함량 근거 정리

PPWR은 플라스틱 포장 재생원료
함량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예외 적용시에도 제조자가 기술
문서로 근거 입증 필요

2030. 1. 1 부터 적용



제8조

바이오기반원료

바이오기반원료 사용 여부, 함량,
원산지/지속가능성 자료 확보
→ 표시 또는 향후 규제 대응 근거
로 정리

2028.2.12일까지 위원회 검토후
지속가능성 요건이나 목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구조이며,
현시점은 근거자료 선확보가 핵심

2028. 2. 12 부터 적용



제9조

퇴비화 가능 포장재

대상 포장 여부 확인 후 퇴비화
적합성 시험성적서 확보
→ 산업적 퇴비화 적합 근거 정리

특정 포장과 과일·채소 스티커에
대해 산업적 퇴비화 적합성을
요구하고, 관련 표준 마련 예고



제11조

재사용 포장재

재사용 설계, 회전수, 회수, 재충전,
재조건화 등 자료 확보
→ 재사용 가능성 기술 문서로 입증
(재사용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포장
만 재사용 표시 가능)

2025. 2. 11 부터 적용



제12조

포장재 라벨링

재질구성, 분리배출 정보, 재사용/
퇴비화 여부, QR 연계 정보 확보
→ 라벨 시안 및 디지털 정보 체계
준비

PPWR은 조화된 라벨링 및
디지털 정보 제공 의무 도입으로
명확한 분리배출 및 정보 전달
유도

2028. 8. 12 부터 적용

기업 대응 실무 (10) EU 생산자 등록

| (생산자 등록 (Register of Producer)) * EU 등록시스템은 2027년 중반 가동 예상 (회원국별 차이, 일부국가 조기 시행 가능성)

시행

2026. 8.12부터 적용

핵심

EU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는 모든 생산자는 회원국별 등록부에 포장재 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음

Producer 정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 수입자 · 유통업체

- ① EU 회원국 내에서 운송/서비스/1차 생산 포장재를 해당 국가에 최초 출시
- ② 회원국 내에서 ①외 포장된 제품을 해당 국가에 최초 출시
- ③ EU 회원국 또는 제3국(한국 등)에 설립되어, 원거리 계약을 통해 다른 EU 회원국 최종 사용자에게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는자 (Cross-border B2C/D2C)

기업 대응 실무 (10) EU 생산자 등록 (국내제조사수출형태별 Producer 의무)

사례 및 주요포인트

사례 1

한국제조사 → 독일수입사 → 독일소매점 (B2B 수출)

사례 2

한국제조사 → 독일소비자에전자상거래를통한 직접 판매 (독일 B2C)

사례 3

한국제조사 →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전자상거래판매 (3개국 B2C)

중요 포인트

- ✓ **B2B 수출 시**: 수입사가 Producer 역할을 하므로 한국 제조사는 Manufacturer 의무만 수행
- ✓ **Cross-border B2C 판매 시**: 각 국가별로 Producer 등록 필수 (EPR 가입, 비용 부담)
- ✓ **Producer 정의 (제44조)**: EU 시장에 포장재를 최초로 출시하는 자

구분	사례 1 (B2B수출)	사례 2 (독일 B2C)	사례 3 (3개국 B2C)
한국 제조사 지위	Manufacturer	Manufacturer + Producer (독일)	Manufacturer + Producer(프랑스) + Producer(스페인) + Producer(이탈리아)
Manufacturer 의무	기술문서·DoC	기술문서·DoC	기술문서·DoC
Producer 의무	없음(독일 수입사가 부담)	독일 EPR 대리인, 독일 EPR 부담금 독일 Producer 등록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각각 EPR 대리인·Producer 등록·EPR 부담금
EPR 대리인 수	0명	1명 (독일)	3명(각국)
비용 부담	기술문서 작성비만	기술문서 + 독일 EPR 부담금	기술문서 + 3개국 EPR 부담금

Chapter 03.

PPWR 대응 지원사업



03

유럽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 대응 지원 시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

지원 개요

사업목적

-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 PPWR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문서, 시험 평가, 유럽 현지 대리인 소요 비용 등 지원

사업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6. 11. 30.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유럽수출(예정)기업, 포장재및포장재료제조기업등

유럽 PPWR 규제 대응에 필요한 기술문서, 시험 및 평가, 유럽 대리인 선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70%) 지원**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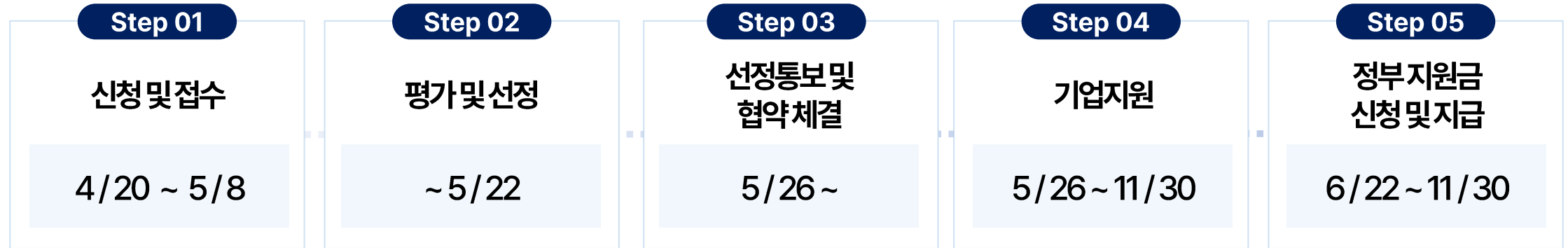
- ✓ 유럽 PPWR 규제 대응에 필요한 기술문서, 시험 및 평가, 유럽 대리인 선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70%) 지원

구분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포장재에 한함)	항목별 지원 한도 (단위 : 천원)
필수 지원 항목	교육, 진단 및 기술문서 작성	PPWR 규제 교육 및 적합성 진단 기술문서(TD) 및 자기적합성선언서(DoC) 작성 영문번역 및 검토	1,750/제품
선택 지원 항목	유해물질 시험 4대 중금속, PFAS	4대 중금속 시험 비용 (Pb, Cd, Hg, Cr6+)	70/재질
		PFAS 시험 비용	
	재활용성 평가	재활용성 평가 비용	1,050/재질
	최소화 평가	최소화 평가 비용	1,050/제품
	유럽 대리인 선임 /EPR 신고	유럽 대리인 선임 및 EPR 신고 대행 비용	2,100/기업

※ 참고 사항

- 기업당 필수 지원항목은 반드시 1제품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필수 지원 항목은 관리기관(KTR)에서 수행
단, 유럽연합에 직접 수출하지 않는 국내 포장재·포장재료 공급 기업은 교육·진단 및 기술문서 작성 지원항목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며 항목별 지원 한도는 1,400천원/제품
- 선택 지원 항목은 관리기관 또는 KOLAS(ISO 17025) 등 AP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평가 기관 자료만을 인정함
-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7,000천원 한도로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유럽 재활용성 평가기관 (RecyClass, Cyclos-HTP 및 유럽연합 회원국내 EPR 기관이 지정한 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최대 3,500천원까지 인정 가능)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지원은 불가함

추진 일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6년 4월 20일(월) 09:00
~ 5월 8일(금) 18:00까지

신청방법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운영기관 이메일로 제출
(KTR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www.ktr.or.kr)

운영기관	E-mail	전화번호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EU PPWR 규제대응 TF	ppwr@ktr.or.kr	02-2092-3685

EU PPWR 규제 대응 교육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

✓ EU PPWR 규제대응을 위한 품목별 기술문서 작성 등 정보제공 및 맞춤형 교육 실시

구분	교육 내용
PPWR 심화교육 (10회)	품목별(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전자제품) 포장재 최소화, 재활용 설계 및 기술문서 작성 등 PPWR 대응을 위한 심화교육 실시

신청 방법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센터 접속
(www.smes.go.kr/globalcerti/)



기업회원가입



교육신청 바로가기
<교육일정 확인>



교육 신청

참고 사이트

| PPWR 영문 규정 파일 다운로드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 EU 집행위원회 PPWR 사이트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packaging-packaging-waste-regulation_en

| 유의사항

본 자료는 EU PPWR(Regulation 2025/40) 규정 등을 기반으로
국내 수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참고용 자료로서,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4월 기준)

- 일부 조항의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은 EU 집행위원회의 세부 시행규칙/위임법령 등으로 명확화 될 예정입니다.
- 실무 적용시에는 위 원문 규정(영문) 및 향후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향후 공식 해석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보완될 수 있습니다.



PPWR 영문
규정 파일 다운로드



EU 집행위원회
PPWR 사이트

감사합니다.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EU PPWR TF장 황범구

Tel. 02-2092-3685 | **E-mail.** ppwr@ktr.or.kr



EU, 식품·화장품 포장재 관리 규정 대응 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EU · 한국 간 포장재 규정 비교

식품



모든 포장재

EU-환경총국
(EU 2025/40)

화장품
포장재
관리 규정X

식품포장재

EU-보건 · 식품안전총국
(EU 1935/2004 등 7개)



모든 포장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화장품
포장재
관리 규정X

식품포장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EU, 식품접촉물질 규정

규정	구분	주요 내용
EU 1935/2004	일반 원칙	인체 건강보호, 식품 성분 변화 방지 등
EU 2023/2006	우수 제조 기준(GMP)	품질관리 및 문서화, 제조공정의 위생 및 추적성 확보 등
EU 10/2011	플라스틱(합성수지) 관리	허용물질목록, 총 이행량 기준(OML) 및 개별 이행량 기준(SML), 표시 기준, 규정준수 선언서(DoC) 등
EU 2022/1616	재생 플라스틱 물질	수집 및 전처리, 오염제거 요구사항, 재활용 공정 승인 및 등록 등
EU 405/2009	활성기능물질	허용물질목록, 표시 기준, 규정준수선언서(DoC), 추적성 확보 등
EU 284/2011	중국·홍콩산 멜라민/폴리아미드 수입 요건	특정이행 한계치(SML), 수입 전 시험성적 및 적합준수 선언서 제출 등
EC 1895/2005	에폭시 유도체 사용 제한	BADGE 및 그 유도체 특정이행한계치(SML) 이하로 사용제한, BFDGE·NOGE 및 그 유도체 사용 금지
EU 2024/3190	비스페놀류 사용 금지	플라스틱, 금속코팅, 바니시, 접착제, 잉크, 수지, 고무 등 BPA 사용 금지

지침	구분	주요 내용
2005/31/EC	세라믹 물질	납, 카드뮴 이행 분석방법 및 이행량 기준(SML), 규정 준수선언서(DoC) 등
2007/42/EC	가공셀룰로스 필름	허용물질목록 등
93/11/EEC	고무젓꼭지 니트로사민류	니트로사민 및 니트로사민 생성물질 이행량 기준(SML)
78/142/EEC	염화비닐 단량체	잔류 염화비닐 단량체 이행 제한



EU 2025/351

- (개정) '25.2.24. → (발효) 3.16.

- (개정 내용)

EU 10/2011 : 적용범위, 정의, 사용물질, 재료 및 제품의 요건, 요구사항, 표시, 시험, 부속서 등

EU 2022/1616 : 재생 플라스틱 규정의 적용 제외 범위 명확화

EU 2023/2006: 부속서 (품질보증, 재처리 방법 등) 개정

EU, 비스페놀A 등 사용 금지(EU 2024/3190)

□ 비스페놀류 및 비스페놀 유사체 사용 금지

- 접착제, 고무제, 이온교환수지, 플라스틱, 인쇄 잉크, 실리콘, 광택제 및 코팅에 BPA와 유해한 비스페놀류 및 비스페놀 유도체 사용 금지

단, 2가지 제품은 제외

- ① 여과 분리막 제조 및 폴리아미드 멤브레인의 미세다공성 지지체로 사용되는 폴리설폰 수지
- ② 대형 탱크와 용기 및 대용량 배관 표면에 경화되는 액상 에폭시 기반 바니시 및 코팅제



★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 에스터(BADGE)를 제조에 사용할 수 있으나, EU2024/3190 제4조에 따라 BPA는 잔류 금지, 부록 II에 해당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아야 함(검출한계 1 µg/kg)

★ 유해한 기타 비스페놀류 및 비스페놀 유도체란? EC 1272/2008 부록 VI 표3 중 유형 1A 또는 1B '돌연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통칭 'CMR') 또는 유형 1 '인체 건강에 대한 내분비교란 물질'에 포함된 것

물질명	CAS No.	Ec 1272/2008 부속서 VI 표3 에 따른 분류
Bisphenol S	80-09-1	생식독성 구분 1B
4,4'-isobutylethylidenediphenol	6807-17-6	생식독성 구분 1B
Phenolphthalein	77-09-8	발암성 구분 1B
Bisphenol AF	1478-61-1	생식독성 구분 1B
Tetrabromobisphenol A	79-94-7	발암성 구분 1B

[참고] ECHA 위해성평가위원회는 비스페놀 F를 생식독성 구분 1B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발표함('24.9)



EU, 비스페놀A 등 사용 금지(EU 2024/3190)

□ 경과조치 기간

구분	식품접촉물질(FCM)	'26년 7월 20일부터 규정 적용	'27년 7월 20일부터 규정 적용	'28년 1월 20일부터 규정 적용	'29년 1월 20일부터 규정 적용	비고
A	B를 제외한 일회용 식품접촉 물품 (예: 캔과 같은 금속 포장재)	EU로 최초 유통되는 제품				이미 식품이 충전 된 포장재는 재고 소진 시까지 시장에서 유통 가능
		미사용 포장재라면 '27년 7월 20일까지 식품 충전 후 시장으로 유통 가능				
B	과일, 채소, 수산물 보존용 일회용 최종 식품접촉 물품, 또는 BPA를 사용해 제조된 바니시/코팅이 외부 금속 표면에 만 도포된 경우			EU로 최초 유통되는 제품		이미 식품이 충전 된 포장재는 재고 소진 시까지 시장에서 유통 가능
				미사용 포장재라면 '29년 1월 20일까지 식품 충전 후 시장으로 유통 가능		
C	D를 제외한 반복사용 최종 식품접촉 물품 (예: 음료병과 같은 주방용품)	EU로 최초 유통되는 제품				사업자가 교체 시점까지 계속 사용 가능
D	전문 식품 생산 설비로 사용하는 반복사용 최종 식품접촉 물품			EU로 최초 유통되는 제품		사업자가 교체 시점까지 계속 사용 가능

EU, 플라스틱 관리 규정(EU 2025/351)

□ Article 2 (적용범위)

-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단, 이온 교환수지, 고무, 실리콘 제외)
- (신설) 이 규정은 접착제, 코팅제 및 인쇄 잉크 제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료와 물품에 적용되거나 통합될 수 있는 물질에 적용되는 유럽연합 또는 국내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U 10/2011은 특정 물질에 적용되는 EU 또는 회원국가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EU 2024/3190 등)

EU, 플라스틱 관리 규정(EU 2025/351)

□ Article 3a (높은 순도)

- (신설) 식품 접촉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에 포함된 비의도적 오염물질(NIAS)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순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함

* NIAS (Non-Intentionally Added Substances): 사용된 물질 내 불순물이나 생산 과정에서 형성된 반응 중간체, 또는 분해 또는 반응 생성물

- (i) NIAS가 부속서 I, 표1에 있는 허용물질의 규격 및 제한사항을 준수 한 경우
- (ii) NIAS가 제19조에 따라 위해성 평가가 적합한 경우
- (iii) NIAS가 EU 지침에 따라 독성학적 평가를 거쳐 유전독성이 배제 되었다고 결론, 최종 제품의 사용용도 및 접촉 식품에 따라 NIAS가 식품으로 0.05 mg/kg food 이하로 이행됨을 확인한 경우
- (iiii) (ii) 및 (iii) 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최종 제품의 사용용도 및 접촉 식품에 따라 NIAS가 식품으로 0.00015 mg/kg food 이하로 이행됨을 확인한 경우



원료에서 비의도적 오염물질(NIAS) 검출된다면, 물질에 따라 위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함

EU, 플라스틱 관리 규정(EU 2025/351)

□ Article 8 (물질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신설) 플라스틱 원료 물질(폐기물로 제조된 물질 포함)은 높은 순도여야 하고, 사용·용도(의도되거나 예상되는 것까지 포함)에 적합한 기술적 품질을 가져야 함
- (신설) 물질에 대한 조성은 사용자에게 알려야 함
- (신설) 천연 다성분 재료인 UVCB 물질은 천연 기원으로 얻어진 그대로 사용 가능함

* UVCB(Unknown or variable composition, complex reaction products or biological or other natural origin) 물질
: Paraffin wax, hydrogenated hydrocarbon resins, Rosin 등

EU, 플라스틱 관리 규정(EU 2025/351)

□ Article 10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의 조성에 관한 일반적인 제한 및 요건)

- (6조3항에서 이동)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은 부록 II 기준 충족해야 함

* 부록 2: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의 제한(알루미늄, 암모늄, 안티몬, 비소 등 24개 금속물질에 대한 SML)

- (신설) 다음 조건 충족 시 재가공 플라스틱으로 포함

- 2008/98/EC(폐기물 기본 지침, Waste Framework Directive) 제5조에 따른 부산물(by-product)
- 제2조1항(a) 제품(플라스틱으로만 구성된 재료 및 물품)이고, 허용된 물질로만 만든 것으로 EU 2023/2006 부록 C에 따라 오염방지를 위해 별도로 분리/수거 등 관리 된 것
- 제2조1항(b) 및 (c)제품(플라스틱 다층포장 재료 및 제품, 인쇄되거나 코팅된 재료 및 제품)은 위해성 평가 받은 것

재가공(reprocessing)은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off-cuts, scrap) 등 **부산물**을 다시 용융·혼합·반응 또는 기타 가공하여 재투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폐기물로 전환되지 않은 부산물(by-product)로서 관리되어야 함

★ **공정부산물(자투리)는 재활용 플라스틱(EU 2022/1616)이 아님**

C. Reprocessing of plastic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Regulation (EU) No 10/2011

1. Plastic offcuts, scraps, and similar by-products of plastic manufacturing processes and intended to be reproce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of Regulation (EU) No 10/2011 ("materials intended for reprocessing") shall be collected separately from waste as close as technically achievable to the point at which they are cut, scrapped or otherwise produced from a similar plastic manufacturing operation leading to offcuts and scraps and similar by-products of plastic.
2. Materials intended for reprocessing shall be collected either using a closed piping or belt system intended for that purpose only, or in clean bins, bags, or other containers designated to this purpose and which can easily be recognised as being intended only for this purpose. Those types of containers shall be closed as soon as they are fully filled. Up to the point of reinsertion in the plastic production process the applied containers shall be designed to prevent any contamination of the plastic material.
3. Such bins, bags or containers may be transferred for reprocessing individually or be grouped in secondary packaging. The resulting unit shall be considered as a batch of material intended for reprocessing. The definition of "batch" in Article 2(3), point (20) of Regulation (EU) 2022/1616 shall apply.
4. At any stage of the reprocessing of plastic, operators shall ensure that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prevents it from being mixed with plastic of a different composition, other materials, or with waste. The transfer of batches of plastic by-products between operations prior to their use in the manufacturing of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including the mixing with plastic of the same composition, shall be recorded and their traceability shall be accounted for in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EU, 플라스틱 관리 규정(EU 2025/351)

□ Article 14a (표시)

- (신설) 반복 사용(Multi-use)하는 식품 접촉 플라스틱 제조사는 사용시 열화를 낮추기 위한 사용방법, 열화 징후, 손상·오용으로 인한 식품오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 표시를 해야 함
- (신설) 소비자 사용방법(식품종류, 접촉시간/온도, 가열조건 등), 허용원료물질에 대한 조건(SML 등) 표시

EU, 플라스틱 관리 규정(EU 2025/351)

□ Article 16 (지원문서)

- (신설) 국가 관할당국이 요청하면 재료 및 물품(용기, 포장재 등), 제조 중간 단계의 제품(시트, 프리폴 등), 물질(원료)이 10/2011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 제공해야 함
- (신설) 물질의 조성에 관한 문서와 순도 관련 문서도 요청시 제공해야 함
- (신설) 입증 자료에는 제5조 준수사항에 따른 시험조건과 결과, 모델링 등 계산, 기타 분석 및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 (신설)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제조 중간 단계 제품의 제조업체의 입증자료에는 제8조 1항과 2항에 준수한다는 문서도 포함되어야 함



제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규정 준수 선언서(DoC)와 관련 증빙 문서(조성, 고순도 입증 근거, 시험, 계산, 모델링 등)를 보유하고, 관할 당국의 요구 시 제출하며, 제조 현장에서의 시료 채취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함

EU, 플라스틱 관리 규정(EU 2025/351)

□ Article 4 (과도기 조항)

- (신설) 2026년 09월16일 이전에 최초 시장 출시된 경우, 재고 소진 시까지 유통할 수 있음
- (신설) 2025년 12월 16일 이후 시장에 처음 공급되었으나 개정 규정을 미준수하는 경우, 해당 DoC에 “이 물질/제품은 2026년 09월 16일 이전에 출시될 최종제품에만 사용 가능함” 문구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신설) 2026년 9월 16일부터는 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함

〈EU 2025/351〉

(25) In order to allow operators to adapt to the changes provided for in this Regulation, it is appropriate to provide that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complying with Regulation (EU) No 10/2011, as applicable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and any other relevant Union legislation are allowed to be first placed on the market for a period of 18 month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and remain on the market until the exhaustion of stocks. However, the production of final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typically involves the supply of several products and substances from intermediate manufacturing stages by other operators. For the sake of consumer safety, the transition to full compliance with this Regulation should be achieved as efficiently as possible, and with minimum delay. Therefore, operators placing on the market, as of nine months before expiry of the 18-months transition period, intermediate products and substances that do not yet comply with this Regulation, should be required to inform the users of those products that they cannot be used to manufacture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to be placed on the market after the transition period expires.

Article 4

Transitional measures

1.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complying with Regulation (EU) No 10/2011 as applicabl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and any other relevant Union legislation, which were first placed on the market before 16 September 2026 may continue to be placed on the market until the exhaustion of stocks.
2. In case a product from an intermediate stage of the manufacturing of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or a substance intended for the manufacturing of such a product, material or article, which complies with Regulation (EU) No 10/2011 as applicabl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Regulation and which is first placed on the market after 16 December 2025 does not comply with this Regulation, the declaration of compliance accompanying that substance or product shall indicate that it does not comply with this Regulation, and that it can only be used in the manufacture of plastic materials and articles to be placed on the market before 16 September 2026.

EU, 플라스틱 관리 규정(EU 2025/351)

□ 부록 IV(준수선언)

- 준수 선언서 작성자 정보(이름, 주소 등), 물질 식별(제품명, 유형, 사용·용도 등), 선언 날짜
- EU 1935/2004 제3조(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은 것), 제11조(5)(허용물질 사용), 제15조(사용방법 등 표시), 제17조 (추적성) 준수 여부 확인
- (신설) 하위 사업운영자(제품 생산자)가 사용하는 물질이 부록 I, II 규격을 준수했는지, EU 1935/2004에 적합한 수준(인체에 위해 하지 않은 수준)으로 NIAS가 존재하는지 입증 자료 추가
- (신설) 중간단계에서는 중간 물질에 포함된 다음 물질의 정보 추가
 - 해당 재료에 포함된 물질 중 부속서 II의 제한 또는 규격 적용 대상 물질에 대한 식별 정보와 함량 정보
 - 유전독성이 배제되지 않았으며, 해당 중간물질의 제조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되어 생성된 물질로, 제품의 사용·용도 및 접촉 식품에 따라 식품으로 0.00015 mg/kg food 이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정보
- (신설) 재가공된 재료는 제10조 1항과 2항 및 EU 2023/2006 부록 C항에 따라 수집·사용 되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야 함
- (신설) 폐기물로 제조된 물질인 경우(부록 I, 표 1에 있는 물질에 한하여), 제8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고순도’ 및 적절한 기술적 품질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식약처 대응 전략 1 : 소통

□ EU, DG-SANTE(보건·식품안전총국) 정보 요청 및 공유

- 국가 간 공식 채널을 통해 국내 업체의 규정에 대한 질의를 EU 보건총국에 전달, 답변 공유
- (그간 추진 현황)
 - 식약처, 주한 EU 대표부 통해 DG SANTE에 질의서 송부('26.1.16., '26.4.1.)
 - DG-SANTE, 질의 사항에 대한 회신('26.4.8.)

[Q1] '26년 9월 16일 이후 추가적인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가?

 European Union ➡ 규정 시행 유예기간 추가 부여 불가

[Q2] 식품 비접촉 플라스틱도 10/2011 규정에 적용 대상인가?

 European Union ➡ EU 1935/2004 제3조에 따라 식품접촉물질이 인체 건강을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므로, 식품 직접 접촉하는 물질 뿐만 아니라, 식품과 접촉이 예상되는 물질 또는 성분이 식품으로 이전될 수 있는 물질 모두 포함함

[Q3] 규정 준수 선언서 작성 및 발급 의무는 누구인가?

 European Union ➡ 제조업체와 사용자(중간단계 제조업체)가 규정준수 선언서를 작성해야 하고, 모든 유통 단계에서 규정 준수 선언서(DoC)를 갖고 있어야 함

식약처 대응 전략 1 : 소통

□ EU, DG-SANTE(보건·식품안전총국) 정보 요청 및 공유

[Q4] NIAS 위해평가는 누가 해야 하며, 위해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 EU 10/2011의 제3조와 제8조는 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조에 사용하는 물질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제조업체와 사용자(중간단계 제조업체)**가 수행해야 함. 위해평가 수행시 **EFSA 지침서***를 참고할 수 있음

* FOR THE PREPARATION OF AN APPLICATION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 SUBSTANCE TO BE USED IN PLASTIC FOOD CONTACT MATERIALS(EFSA, 2008)

[Q5] 재생 플라스틱 사용시, 관련 규정(EU2022/1616) 외 추가로 규정 준수 선언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 재생공정의 투입물은 EU 10/2011 제8조에 적용받지 않으나, 공정 중에 추가한 물질은 고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함. 재생 플라스틱은 EU 2022/1616의 규정준수 선언서를 작성하면 됨
참고로, EU 2022/1616 제4조에 따라 공정의 투입물은 EU 10/2011에 적합한 식품 접촉 물질이어야 함 (E, 5% 제외)



식약처 대응 전략 2 : 분석 기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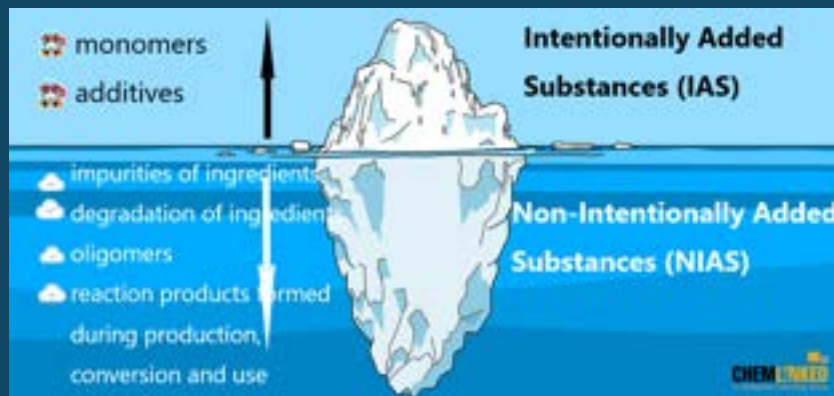
□ 업체가 자사제품에 대한 비의도적 물질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사례집*** 제공

- **(문제점)** 비의도적 물질의 식별을 위해 비표적 분석 방법 등이 다양한 분석기법이 활용되어야 하나, 플라스틱 재료 및 물품에 사용된 원료(단량체, 첨가제 등)에 따라 검출될 수 있는 물질이 달라 통일된 시험법 마련에 한계가 있음

☞ **사례집(안) 마련 및 산업계·시험검사기관 대상 설명회(8월)**

☞ **시험 적용을 통한 보완 및 배포(11월)**

* 필요한 분석장비, 데이터 해석 및 평가방법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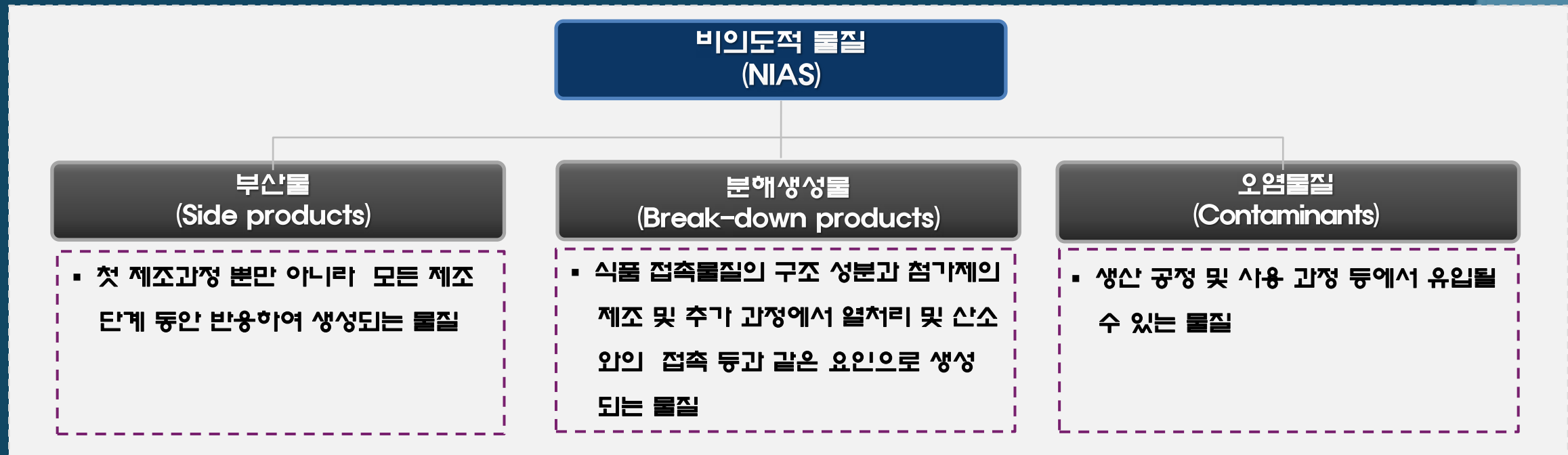


IAS는 관리 가능한 물질인 반면,
NIAS는 식별이 어려운 잠재적 위해 물질

식약처 대응 전략 2 : 분석 기술 지원

□ 비의도적 물질(NIAS) 발생 기전

- NIAS의 발생 기전은 크게 **부산물**(Side products), **분해생성물**(Break-down products), **오염물질**(contaminants)
- NIAS가 생성되는 기본 메커니즘은 ①원료 단계의 불순물 잔존, ②중합 · 가공 중의 부산물, ③열 · 산소 · 빛 · 수분에 의한 열화, ④다층구조 · 인쇄 · 접착 시스템에서의 상호반응, ⑤재활용 원료 유입에 따른 외부오염 및 재처리 열화에 의해 생성



□ 규정 준수 선언서(DoC) 작성 예시(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

Example of a DoC for Plastic FCMs

CAPERPLEX IMPORTS CO.

Current Contact Business Park,
49-57 Ringway St., Monaghan,
Co. Monaghan, Ireland
Phone: 00 353 15 1222 122
Fax: 00 353 15 1222 122
E-mail: info@caperplex.ie
Website: www.caperplex.ie

DECLARATION OF COMPLIANCE

Manufacturer: **Hegarty S.A.**
Rte. 2000, 20000, 20000,
Région Industrielle,
Lille, 59000

Product covered by this declaration: **PET Box 500g**

Date of the declaration: **25.09.2018**

Declaration of compliance with:

- This product complies with Regulation (EC) No. 1831/2003 (as amended).
- This product complies with Regulation (EC) No. 1831/2003 (as amended).
- This product complies with Regulation (EC) No. 1831/2003 (as amended).

This plastic box has been manufactured only with monomers, other starting substances and additives that are authorised under Regulation (EC) No. 1831/2003. A risk assessment according to Article 19 of Regulation (EC) No. 1831/2003 was performed for this product.

Information about the compliance of substances used that are subject to any restriction or specification:

Compliance with overall migration limit: Overall migration is below 10mg/dm² under standard testing conditions laid down in Regulation (EC) No. 1831/2003. Additional information can be provided on request.

Individual substances	Specific Migration Limits (SMLs)	Test results (or estimated level of migration from calculations)
1. 1-hexene	1 mg/kg	SMLs cannot be exceeded for g/v contact ratio below 6 dm ² /kg.
2. isophthalic acid	5 mg/kg	

Information about the compliance of substances subject to purity criteria:
There are no substances subject to purity criteria.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dual use" additives in the material:
No dual use additives were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is product.

Conditions of use:

- Type(s) of food with which it is intended to be put in contact: All foods.
- Time and temperature and storage while in contact with the food: Cold storage for up to 30 days.
- The ratio of food contact surface area to volume used to establish the compliance of the material or article: The compliance testing was done under conditions set out in Regulation (EC) No. 1831/2003 using a surface to volume (S/V) contact ratio of 6 dm²/kg.

Functional Barrier:
There is no functional barrier present.

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 – Example of a Declaration of Compliance for Plastic FCMs

Example of a DoC for Plastic FCMs

CAPERPLEX IMPORTS CO.

Current Contact Business Park,
49-57 Ringway St., Monaghan,
Co. Monaghan, Ireland
Phone: 00 353 15 1222 122
Fax: 00 353 15 1222 122
E-mail: info@caperplex.ie
Website: www.caperplex.ie

DECLARATION OF COMPLIANCE

Manufacturer: **Hegarty S.A.**
Rte. 2000, 20000, 20000,
Région Industrielle,
Lille, 59000

Product covered by this declaration: **PET Box 500g**

Date of the declaration: **25.09.2018**

Declaration of compliance with:

- This product complies with Regulation (EC) No. 1831/2003 (as amended).
- This product complies with Regulation (EC) No. 1831/2003 (as amended).
- This product complies with Regulation (EC) No. 1831/2003 (as amended).

This plastic box has been manufactured only with monomers, other starting substances and additives that are authorised under Regulation (EC) No. 1831/2003. A risk assessment according to Article 19 of Regulation (EC) No. 1831/2003 was performed for this product.

Information about the compliance of substances used that are subject to any restriction or specification:

Compliance with overall migration limit: Overall migration is below 10mg/dm² under standard testing conditions laid down in Regulation (EC) No. 1831/2003. Additional information can be provided on request.

Individual substances	Specific Migration Limits (SMLs)	Test results (or estimated level of migration from calculations)
1. 1-hexene	1 mg/kg	SMLs cannot be exceeded for g/v contact ratio below 6 dm ² /kg.
2. isophthalic acid	5 mg/kg	

Information about the compliance of substances subject to purity criteria:
There are no substances subject to purity criteria.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dual use" additives in the material:
No dual use additives were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is product.

Conditions of use:

- Type(s) of food with which it is intended to be put in contact: All foods.
- Time and temperature and storage while in contact with the food: Cold storage for up to 30 days.
- The ratio of food contact surface area to volume used to establish the compliance of the material or article: The compliance testing was done under conditions set out in Regulation (EC) No. 1831/2003 using a surface to volume (S/V) contact ratio of 6 dm²/kg.

Functional Barrier:
There is no functional barrier present.

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 – Example of a Declaration of Compliance for Plastic FCMs

Example of a DoC for Plastic FCMs

CAPERPLEX IMPORTS CO.

Current Contact Business Park,
49-57 Ringway St., Monaghan,
Co. Monaghan, Ireland
Phone: 00 353 15 1222 122
Fax: 00 353 15 1222 122
E-mail: info@caperplex.ie
Website: www.caperplex.ie

DECLARATION OF COMPLIANCE

Manufacturer: **Hegarty S.A.**
Rte. 2000, 20000, 20000,
Région Industrielle,
Lille, 59000

Product covered by this declaration: **PET Box 500g**

Date of the declaration: **25.09.2018**

Declaration of compliance with:

- This product complies with Regulation (EC) No. 1831/2003 (as amended).
- This product complies with Regulation (EC) No. 1831/2003 (as amended).
- This product complies with Regulation (EC) No. 1831/2003 (as amended).

This plastic box has been manufactured only with monomers, other starting substances and additives that are authorised under Regulation (EC) No. 1831/2003. A risk assessment according to Article 19 of Regulation (EC) No. 1831/2003 was performed for this product.

Information about the compliance of substances used that are subject to any restriction or specification:

Compliance with overall migration limit: Overall migration is below 10mg/dm² under standard testing conditions laid down in Regulation (EC) No. 1831/2003. Additional information can be provided on request.

Individual substances	Specific Migration Limits (SMLs)	Test results (or estimated level of migration from calculations)
1. 1-hexene	1 mg/kg	SMLs cannot be exceeded for g/v contact ratio below 6 dm ² /kg.
2. isophthalic acid	5 mg/kg	

Information about the compliance of substances subject to purity criteria:
There are no substances subject to purity criteria.

Information about the use of "dual use" additives in the material:
No dual use additives were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is product.

Conditions of use:

- Type(s) of food with which it is intended to be put in contact: All foods.
- Time and temperature and storage while in contact with the food: Cold storage for up to 30 days.
- The ratio of food contact surface area to volume used to establish the compliance of the material or article: The compliance testing was done under conditions set out in Regulation (EC) No. 1831/2003 using a surface to volume (S/V) contact ratio of 6 dm²/kg.

Functional Barrier:
There is no functional barrier present.

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 – Example of a Declaration of Compliance for Plastic FCMs

□ 국내 PFAS 및 NIAS 분석 가능 기관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정밀화학센터	02-2102-2676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뷰티소비재센터	02-2092-3735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환경규제센터	031-428-3896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 산업기획팀	02-3470-8129	
한국에스지에스(주)	화학물질 고객대응 5팀	031-460-8028	
(주)세스코 시험분석연구원	시험분석팀	02-2140-3515	
(사)KOTITI 시험연구원	환경안전팀	02-6091-6055	NIAS 분석 (해외 지사로 검체 발송)

국내 화장품 관련 규정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6-19호)

- 제3조(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② 화장품을 제조하면서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으나, 제조 또는 보관 과정 중 포장재로부터 이행되는 등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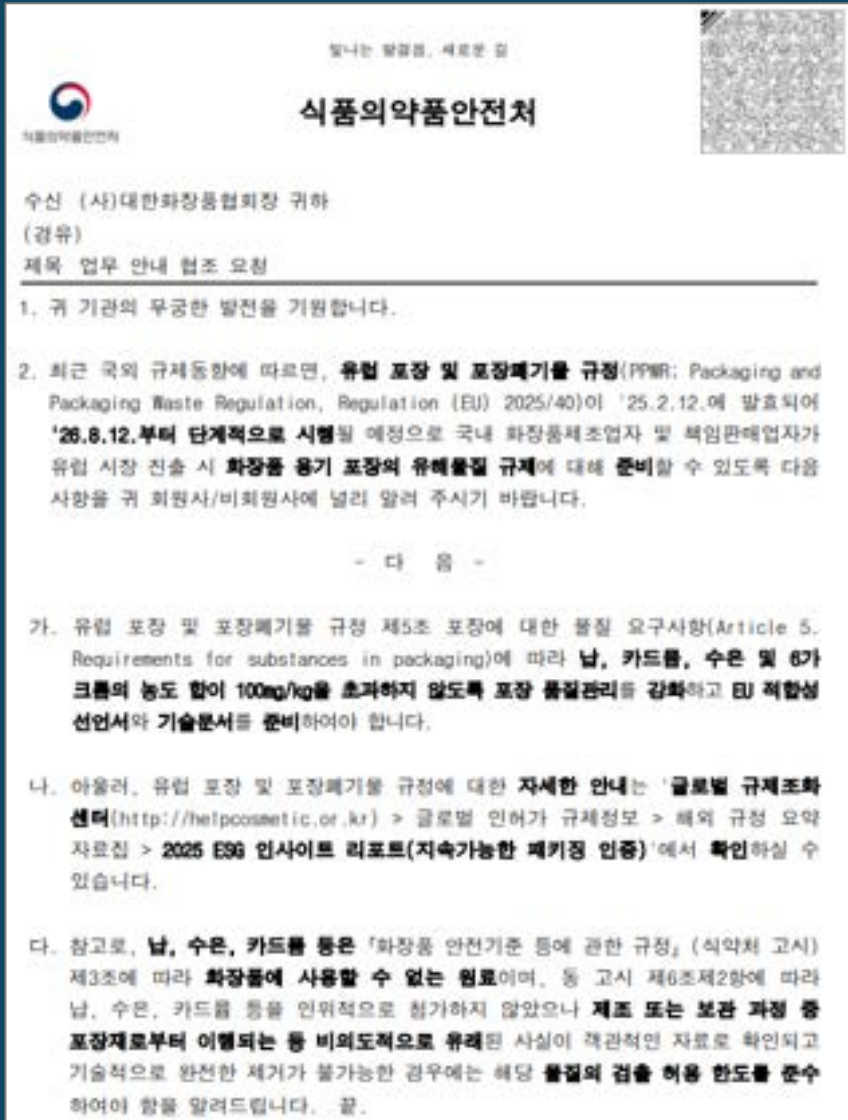
1. 납 :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제품은 $50\mu\text{g/g}$ 이하, 그 밖의 제품은 $20\mu\text{g/g}$ 이하
2. 니켈: 눈 화장용 제품은 $35\mu\text{g/g}$ 이하, 색조 화장용 제품은 $30\mu\text{g/g}$ 이하, 그 밖의 제품은 $10\mu\text{g/g}$ 이하
3. 비소 : $10\mu\text{g/g}$ 이하
4. 수은 : $1\mu\text{g/g}$ 이하
5. 안티몬 : $10\mu\text{g/g}$ 이하
6. 카드뮴 : $5\mu\text{g/g}$ 이하
7. 디옥산 : $100\mu\text{g/g}$ 이하
8. 메탄올 : $0.2(\text{v/v})\%$ 이하, 물휴지는 $0.002\%(\text{v/v})$ 이하
9. 포름알데하이드 : $2000\mu\text{g/g}$ 이하, 물휴지는 $20\mu\text{g/g}$ 이하
10. 프탈레이트류(디부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및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에 한함) : 총 합으로서 $100\mu\text{g/g}$ 이하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원료명	CAS No.	화학물질명
알라닌트라이메치오아미드	65-29-2	
알라닌	337-70-8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교감신경통분열제	300-02-9	
구아레타닌 및 그 염류	55-65-2	구아레타닌
	7983-49-5	구아레타닌 화합트르올로라이드
	645-43-2	구아레타닌 설페이트
구아레타닌	93-14-1	
글루코코르티코이드	-	
글루코타이드 및 그 염류	77-21-8	글루코타이드
글리시알라미드	664-95-9	
글리	-	
무기 나이트라이트(소듐나이트라이트 제외)	14797-65-0	나이트라이트
나프롤렌 및 그 염류	833-31-4	나프롤렌
	550-96-2	나프롤렌 화합트르올로라이드
나프탈렌	91-20-3	
1,7-나프탈렌디올	575-38-2	
2,3-나프탈렌디올	92-44-4	
2,7-나프탈렌디올 및 그 염류 ¹⁾	193-17-2	2,7-나프탈렌디올
2-나프톨	135-19-3	
1-나프톨 및 그 염류 ²⁾	90-15-3	1-나프톨
3-(2-나프틸)-4-히드록시코우아민	30023-42-6	
1-(2-나프틸메틸)퀴놀리놀로라이드	65322-05-8	
3-(2-나프틸)아민	135-08-6	
1,2-나프탈렌인 및 그 염류	134-32-7	1-나프탈렌인
	95-08-8	2-나프탈렌인
	62-67-9	나프롤렌
나프롤렌, 그 염류 및 에텔	57-29-4	나프롤렌
	1041-90-3	나프롤렌 화합트르올로라이드
	7439-92-1	나
나 및 그 화합물	301-84-2	이세트인날
	15943-57-6	
	7449-09-8	네오디올
네오디올 및 그 염류	10024-93-8	네오디올 올로라이드

식약처는 위 고시로 화장품 내용물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음

PPWR 규정 관련 산업계 안내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26.8.12.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국내 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는
유럽 시장 진출 시 화장품 용기 포장의
유해물질 규제에 대해 **준비**하여야 하며,

포장에 대한 물질 요구사항과 더불어
국내 화장품 내용물에 대한 **비의도적인**
검출 허용 한도도 **준수**하여야 함

국민 안전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업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 소개

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전략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01.

대응방안



02.

지원사업 소개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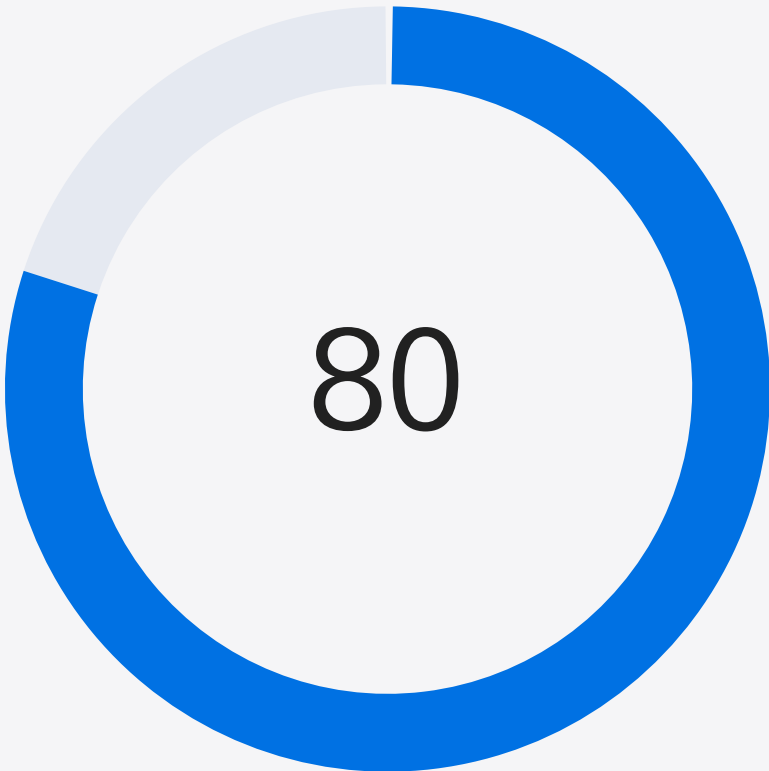
KATI 소개



01. 대응방안

농식품 산업은 타산업 대비 무역장벽 영향 高

①식량안보, 식품안전, 농업보호 정책 → ② 통관, 위생, 검역, 라벨링, 원산지 등 규제 중첩



식품제조업 5인 미만 80.2%
aT 식품산업통계정보(F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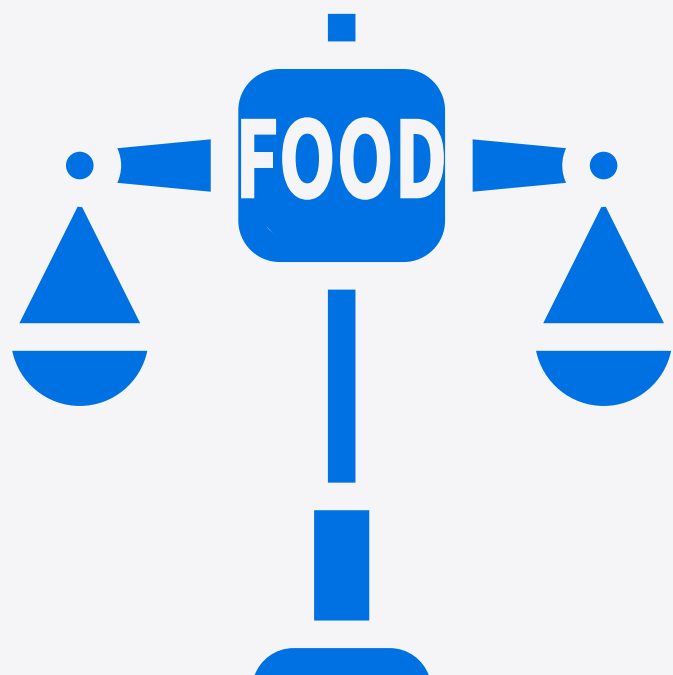
소규모 기업체 비중이 높아
전담 대응 어려움

Pain Point

규제 분석, 시험검사, 문서 작성 등 부담

규제 정보 및 관련 지원사업 등 정보부족

→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지원, 정보제공 필요



환경규제와 식품포장

환경규제와 식품 특성 간
구조적 충돌

Pain Point

식품 포장은 보존성, 위생, 유통기한에 영향

동시에 포장 최소화, 단일포장 등 환경규제 충족 필요

→ 전문성 있는 기술 지원 필요

01. 대응방안



비용부담 완화

컨설팅, 시험검사, 문서
작성 등 종합지원

aT 농수산물유통공사



기술대응 지원

TD(기술문서) 작성 지원,
맞춤형 포장 개선 및 개발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규제정보 제공

포장 규제관련 전문가 보고서,
현지동향, 규정 번역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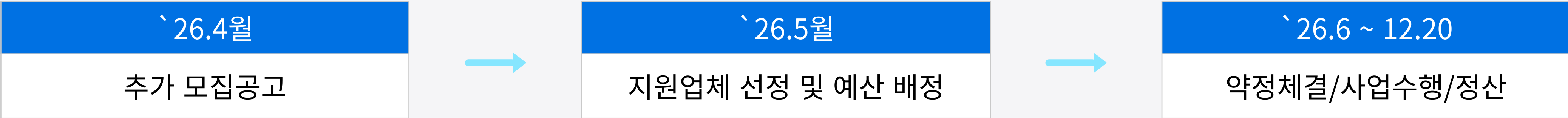
농식품수출정보

02-1.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개요]** 농식품 수출 기업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 도모
- **[지원대상]** 농식품 품목 1만달러(누적, `25.1~`26.3) 이상 수출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수출단계별(4단계)로 구성된 세부 사업메뉴를 배정 예산 내에서 자율적 선택하여 사용

구분	사업 메뉴(총 23개)
1. 생산/수출기반(7)	(1) 수출컨설팅 (2) 수출전문인력 양성, (3) 제품개발(기술도입), (4) 해외인증 등록, (5) 수출보험, (6) 법무/세무/회계 자문, (7) 통번역(수출용 자료)
2. 수확 후 관리(4)	(8) 선도유지제(장기저장제), (9) 포장디자인 개발, (10) 수출 공동브랜드 , (11)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3. 운송 및 통관(5)	(12) 샘플통관운송, (13) 물류효율화, (14) 항만공항 부대비용, (15) 현지 수입등록 및 검사 (16) 무역현안 대응
4. 판로개척(7)	(17) 글로벌홍보, (18) 현지시장 개척, (19) 개별식품박람회 참가, (20) 해외바이어 초청, (21) 판촉 및 신규 입점, (22) 수출상담회, (23) 지사화 사업

- **[지원비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 **[추진일정]**



02-1.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 **[지원내용]** (01) 수출컨설팅, (15)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구분	수출컨설팅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비고
지원내용	해외진출 시 요구되는 수입국 ESG 규제 대응 관련 컨설팅 - (PPWR 대응) 규제 이해를 위한 자문, 포장재 현황분석 및 적합성 진단, 개선방안 제시, 기술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 작성 지원 * 컨설팅 업체를 통한 대행비 등 실행비용 포함	시험, 평가 및 기술문서 작성 대행용역비 - 유해물질(4대 중금속, PFAS 등) 시험, 재활용성, 포장 최소화 평가 등 * 샘플발송비 포함 - 기술문서(TD) 및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대행 용역비	수행기관 리스트 제공
정산서류	· (신청양식) 정산신청서, 중복정산 점검 체크리스트 · (지출증빙) 용역수행사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인보이스 등 세부산출내역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 (결과보고서) 컨설팅 결과 일체, 최종산출물(기술 문서, 적합성 선언서 등)	· (신청양식) 정산신청서, 중복정산 점검 체크리스트 · (지출증빙) 용역수행사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인보이스 등 세부산출내역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 (결과보고서) 자문결과, 검사결과, 최종산출물(기술 문서, 적합성선언서, 라벨링 등) 일체 · (수출증빙)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등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구 가능

● **[문 의 처]** aT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6, 0867, 0868)

02-2.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현지 전문가 및 네트워크(35개국 96개소)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 통관애로 및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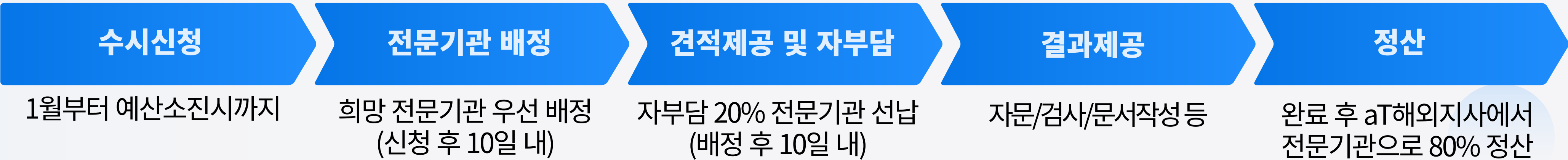
●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바이어 * 국내 대기업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1. 현지 전문기관 자문	- (일반) 통관, 법률, 관세, 위생검역 등 - (특수) 미국 수입경보 해제, 무역분쟁, EU PPWR 대응 등
2. 수입등록검사	- 현지 수입등록을 위한 필수 등록 및 갱신 지원 - 검역 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검사 지원
3. 라벨링 현지화	- (1단계) 원료 등 사전검토, 라벨링 기본 규정 안내 - (2단계) 현지 규정에 맞는 라벨링 견본 제작 등
4. 패키지 디자인 * 바이어전용	- 현지 포장재 및 용기 디자인 시안 제작 지원

● **[지원비율]** 80%(수출업체별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

● **[지원체계]** * 예산소진시까지



02-2.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



* 한국 최초 시험인증기관 유럽법인('08)

[자문] 컨설팅
[검사] PFAS, 중금속 검사
[문서] DoC, TD 작성 대행
[평가] 포장재 최소화 평가,
재활용성 평가



* 식품 전문 변호사로 구성

[자문] 규제 대응 법률 상담
[검사] PFAS, 중금속 검사
[문서] DoC, TD 작성 대행



* 식품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연구 다수 수행

[자문] 규제 대응 법률 상담

02-3. aT 지원사업 신청방법



수출종합지원시스템 (global.at.or.kr)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소개 사업안내 사업신청 사용신청 역량진단 고객지원 수출정보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mmission

EU PPWR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대응 지원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바로가기
(수시접수중)

농식품 글로벌성장패키지 바로가기
(4월 30일까지 접수)

검색창에 **PPWR 지원사업** 을 검색하세요!
오늘하루 보지 않기 닫기

농수산물식품의 글로벌 파트너 aT

더보기 +

수산물 준비...	농식품	농식품	농식품
현지화지원 수산물 준비바우처 신청 게시판 바로가기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추경] 2026년 농식품글로벌 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접수기간 마감 13 일전 2026-04-16 ~ 2026-04-30	안전성조사 2026년 대일수출가공식품 사 전등록 지원사업 안내 접수기간 마감 228 일전 2026-04-15 ~ 2026-12-01	시장다변화 프론티어 육성 2026년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 베이팅 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 접수기간 마감 7 일전 2026-04-14 ~ 2026-04-24

메인
글로벌뉴스
배임오피
백이아정보
공고일정
무역동역
증명제출

02-4. 공동기술개발(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개요]** 식품기업 상품화, 제품화를 위한 종합 기술지원을 통해 기업기술 경쟁력 확보 및 제품시장성 강화
- **[지원대상]** 식품 관련 기업(전국식품기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식품포장 종합개선	포장 구조 및 재질 설계(원가절감), 친환경 포장 개발
식품품질개선	맛 품질 평가, 물성 최적화, 대체소재 적용(나트륨/당류 저감화, 천연 보존료 및 색소 적용 등), 수출현지화
제품생산	상품화 기획 및 실증, 양산화 촉진, 식품진흥원 공유공장 시설 활용 제품 개발
기능성식품	GLP 안전성평가, 유효성 평가, 건강기능식품 생산공정 표준화, 기능성식품 제형 레시피 개발, 인체적용시험
대체식품	대체식품 기술 개발 지원, 식물성 단백질 활용 제품 개발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식품 시제품 개발(원료소재 가공), 고령친화식품 물성 최적화(KS 규격 확보)
유망기술	냉해동 기술 활용 품질 개선, 미생물 제어, 유통기한 연장 살균 기술, 수출연계형 HMR식품 개발 등
수출중심	수출용 포장재 개발 및 물류 유통환경 시험, 해외 기능성 인증 획득

02-4. 공동기술개발(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PPWR 상담	PPWR 전반에 대한 상담
시험분석 지원 (장비활용지원)	PPWR, 그 외 해외인증에 필요한 시험분석 지원
포장최소화 지원 (기술지원)	친환경 트렌드(재활용, 재사용, 저감사용) 최적포장 개선개발 포장재질부터 유통물류까지 포장최적화 * 친환경포장관련 환경부 장관상 수상(`24.9), 식품분야 최초 국제안전수송협회(ISTA) 인증실험실 보유(19.11)
전문코디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활용, 단기간 필요한 포장개선개발(공고중)
시설인증지원	저탄소인증 등 식품기업 시설인증 지원

02-5. 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지원사업 신청방법



푸드폴리스
(www.foodpolis.kr)



03. KATI 소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대화형 정보검색 서비스
채티(ChaTi)와 함께하세요!

K-푸드 수출의 글로벌 길잡이

KATI

농식품 수출정보

농식품 수출 데이터

농식품 수출입 통계, 통관 문제 사례,
국가별 식품첨가물·유해물질 사용기준 DB

글로벌 시장 동향

국가별 수입제도 변동사항, 수출입동향,
해외시장동향, 비관세장벽 이슈

수출 킬링 콘텐츠

수출 트렌드 및 국가별 수입 제도 관련
카드뉴스·뉴스레터·영상·인포그래픽

심층 분석 보고서

농식품 수출이슈, 통관거부 및 리콜사례,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수출 정보 제공



고객문의 aT 수출정보부 kati@at.or.kr



농식품수출정보 (kati.net)

국내 유일 농식품 수출정보 전문 서비스

aT수출지원사업 알림톡 서비스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알림

" 원하는 관심 지원사업 공고 자동알림 제공 "



- 수출지원사업 공고 자동 알림
- 챗봇 사업 안내 및 검색 기능
- 모집공고 캘린더 제공 (D-day)
- 디지털 공사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매일 14시에 신규 공고 뿐만 아니라 마감 임박 공고가
카카오톡 KATI 채널을 통해 자동 알림 제공됩니다.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면? @KATI농식품수출정보 를 친구추가하세요!

구독
방법

1. KATI 농식품수출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해주세요.
2. 공고 알림을 원하시는 경우, 채널 대화방 하단의 채널메뉴 선택
"채널메뉴 → 사업알림설정"에서 관심사업을 등록!
3. 수출사업안내 및 사업가이드북 메뉴를 통해
공사 수출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요.
4. 캘린더 기능을 통해 사업공고 마감일정 관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QR코드 간편친구추가

구독자 환영!
로켓배송

감사합니다.
